

제 343 호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터식
편집 : 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83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방간실
전화 75-6444, 6090

1972. 1. 30.

시보

차례

이 항은 표지에 표기되는
편집으로 정하지 않았다.

3. 1.

서울특별시 시민과강

◎ 조례

제 747 호 서울특별시 소방용수리시설의 기준에 관한조례제정 3

제 748 호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원 등재해보상에 관한조례 5

◎ 규칙

제 1287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업소 종업원 규칙 중 개정규칙 ... 11

제 1288 호 서울특별시 윤전면 허점수제행정처분 규칙 중 개정규칙... 12

◎ 고시

제 13 호 도시계획 학교시설 결정 12

제 17 호 서울도시계획시설 및 사업설시계획인가변경 13

◎ 공고

제 13 호 분뇨비수거구역 지정 공고 14

제 14 호 청 산금납입고지서 공시 송달 15

◎ 사령

◎ 정정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 소방용 수리시설의 기준에 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3년 1월 29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47 호

서울특별시 소방용수리시설의
기준에 관한 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 제 26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에 필요한 수리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소화전등의설비)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하는 수도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소화전 저수조 기타 소방용 수리시설을 하여야 한다.

제 3조 (소방용수리시설의종류) ① 소방법 제 26 조제 2 항의 규정에서 공공의 소방에 필요한 수리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계기하는 것을 말한다.

1. 소화전
2. 저수조
3. 풀

4. 하천

5. 해, 호, 운하

6. 봇

7. 우물

8. 급수탑

9. 하수도

제 4조 (소방용수량과수리시설의위치)

① 소방용수리시설은 상시 저수량이 40 입방미터 이상 또는 흡수 가능수량이 때문 1 입방미터 이상이고 계속하여 40 분이상을 흡수할 수 있는 것이 라야 한다.

② 소화전은 관구 직경 63.5 미리미터이어야하고 직경 150 미리미터 이상의 배관에 부설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배관망의 일변이 180 미터이하가 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75 미리미터 이상의 배관에 부설할수있다.

제 5조 (소방용수리시설의 설치구분)

① 소방용수리시설은 시 가지 (건축물의 밀집한 지역의 평균 건폐율 (가구내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합계를 그 가구의 면적에 대하는 비율)이 10 %이상의 가구에 연속된 지역이고 그 구역내의 인구가 1만이상의 지역을 말한다.) 또는 밀집지 (건축물의 밀집한 지역으로 평균 건폐율이 10 %이상의 가구에 연속된 지

<p>역이 고 그 구역내의 인구가 100명 이상 1만명 미만의 지역을 말한? 다) 의 소방대 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 수리시설 까지의 거리는 별표에 개기하는 수치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p> <p>③ 시가지 또는 민집한 이외의 지역과 이에 둘하는 지역의 소방용 수리시설은 당해 지역내의 소방대 상물로부터 하나의 소방용 수리시설 까지의 거리는 140미터이내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p> <p>④ 전 각항에 정하는 소방용 수리시설의 배치는 소화전 단 절충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p>	<p>1. 이내</p> <p>2. 흡수부분의 수심이 0.5미터 이상</p> <p>3. 소방펌프 자동차가 용이하게 부서 할 수 있을것.</p> <p>4. 흡수에 저장이 있는 토사, 진개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체거의 선비가 있을것.</p> <p>5. 흡수관 투입공이 방형의 경우에는 일면의 길이 60센치미터 이상 원형의 경우에는 직경 30센치미터 이상일것.</p>
	<p>제 6 조 (소방용 수리시설의 관리의무)</p> <p>소방용 수리시설의 관리자는 모든 소방용 수리시설을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p> <p>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p> <p>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모든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것으로 본다.</p>

1. 지면으로부터의 낙차가 4.5미터

1973.1.30

17-5

별 표

구분을 명시하는 용도지역	구조율이 2/3 이 상이고 연간 평균 풍속이 매초 4 미터 미만의 곳	기타
상업지역, 공업지역	100 미터	80 미터
기타 지역 및 용도지역의 지정이 되지 아니한지역	120 미터	100 미터

참 고

-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하는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
- 구조율이라 함은 지붕이 불연재료(건축법 제2조제11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또는 연소의 방지

에 있어서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구조이고 또한 외벽이 토벽이거나 또는 연소의 방지에 있어서 이와 동등이상의 효력이 있는 구조로 된 구조물의 수와 당해 시가지 또는 털집지의 건축물의 총수에 대하여 비율

과 무관리의 승인을 염두에 계정한 서울특별시의 용소방대원 등 재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2년 1월 29일

⑤ 서울특별시조례 제 748 호

서울특별시의 용소방대원 등

재해보상에 관한 조례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한 의용소방대원과 동법 제 32 조제 2 항 또는 제 37 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연소방지 또는 인명구조작업에 종

사한 자로서 이로 인하여 질병, 부상 또는 사망한자(이하 "의용소방대원 등"이라 한다)에 대한 보상(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조례에서 "봉급월액"이라 함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규정된 5급율 1호봉의 봉급액을 말한다.

제 3조(재해보상의 종류) 재해보상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요양보상
- 장해보상
- 장재보상

제 4조(요양보상) ① 의용소방대원 등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요양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치료를 하거나 치료비를 지급한다.

② 전항의 치료비는 봉급월액의 5월분을 초과할 수 없다.

제 5 조 (장해보상) ① 의용소방대원 등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부상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에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장해의 정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전항의 신체장해의 등급 및 신체장해의 등급별 장해보상금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③ 별표 2에 게기된 신체장해가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그중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에 의한다.

④ 이미 신체장해가 있는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동일한 장해가 가중된 경우에는 전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액에서 이미 받은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액을 공제한 금액을 장해보상액으로 한다.

제 6 조 (장재보상) 의용소방대원 등이 소방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 또는 장재를 행하는 자

에게 봉급월액의 12월분을 지급한다.

제 7 조 (재해보상청구) ① 제 4 조 내지 전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는 별지 제 1호서식 내지 제 3호서식에 의하여 재해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자체없이 그에 대한 결정을 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법령에 의하여 행한 처분 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신체장해등급표

등급	신 체 장 해
제 1 급	1. 양안이 실명된자 2. 양상지의 완판절 이상이 함께 절단된자 3. 양하지의 족판절 이상이 함께 절단된자. 4.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한자 5. 편상지중 완판절 이상과 편하지의 족판절 이상이 함께 절단된자 6. 흉복부 또는 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받아 종신토록 취업 능력을 잃은자
제 2 급	1. 편안이 실명된자 또는 양안의 조정시력이 0.1 이하로 된자 2. 편상지중 완판절이상이 절단된자 3. 편하지중 족판절 이상이 절단된자 4. 생식기의 결손으로 인하여 생식기능을 잃은자 5. 흉복부 또는 장기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받은것이 현저한자 6. 정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받은것이 현저한자
제 3 급	1. 저작 또는 언어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받은것이 현저한자 2. 외기도의 기능에 심한 장해를 받은것이 현저한자 또는 안모에 심한 추형을 일으킨자 3. 고막의 결손으로 인하여 청력이 완전히 상실된자 4. 척추에 심한 기형을 일으켰거나 척추의 손상으로 인하여 운동에 장해를 받은것이 현저한자 5. 양무지 혹은 수지중 5지 이상을 잃은자 6. 편상지 또는 편하지의 대판절중 1판절의 기능을 잃은자
제 4 급	전 각등급 이외의 신체장해

별표 2 신체장해등급별장해보상표

등급

제 1 급	봉급월액의 10월분
제 2 급	봉급월액의 9월분
제 3 급	봉급월액의 8월분
제 4 급	봉급월액의 7월분

제 1 호서식 요 양 보 상 청 구 서

1. 소 속(주소)

2. 성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3. 상병명 상병의 부위와 정도

4. 상병의 경과 상병의 원인과 증상

5. 요양의 내용

6. 소요요양비내용 합계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소재지

병원 또는 진료소명칭

직업 및 성명

1.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일

2. 상병명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당해소방서장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명

서울특별시장 키하

제 343 호

시

보

1973. 1. 30. 17-9

제 2 호서식

장 해 주 보 상 창 구 서

1. 소 속(주소)

2. 성명 년 월 일

3. 상 병 명

4. 부상 또는 발병년월일 년 월

5. 장해의 정도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소재지

병원 또는 진료소명칭

직 및 성명

1. 장해발생년월일

2. 장 해 명

3. 청구금액및장해등급

위의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당 해 소 방 서 장

(@)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성명

(@)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17-10 제 343 호

시 보

1973.1.30

제 3 호서식

장 재 보 상 청 구 서

1. 소 속(주소)

2. 성 명

성별

생년월일

년 월 일

3. 부상 또는 별명 년월일

년 월 일

4. 사망년월일

5. 사망경위

6. 장재보상청구금액

위의 사실과 상위 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당해 소방서장

(인)

위와 같이 청구함.

년 월 일

청구자주소 및 사망자와의 관계

성 명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1. 유족이 청구할 때에는 호적등본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내연관계에 있는자는 내연관계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장재를 행한자가 청구할 때에는 장재사실인 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43 호

시 보

1973.1.30. 17-11

규 칙

서울특별시 자동차 운수사업소 종업원 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 한다.

서울특별시 장

1973. 1. 29

⑤ 서울특별시 규칙 제 1287 호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업소 종업원 규칙 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자동차운수사업소 종업원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종업원 일급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종업원일급표

직 종	일 급 액(원)	비 고
승무감독	1,030	
자동차운전원	1,030	
자동차정비사(정비관리자에 한함)	1,000	
자동차정비사	850	
자동차부정비사	670	
자동차정비원	400	
자동차부정비원	300	
배차원	320	
수금원	320	
경비원	270	
사감원	320	
안내원	180	
정비보조원	180	
차량점비원	180	

부 칙

이 규칙은 1973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1456

16-10

94

17-12 제 343 호

시 보

1973. 1. 30.

서울특별시 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
분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장

1973. 1. 29

⑤ 서울특별시규칙제 1288호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
제행정처분규칙증개정규칙

서울특별시운전면허점수제 행정처분
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3조(배점기준)별표 1 중 일련번호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일련번호	위반내용	적용법조	배점
20	주차위반	제 28조	20점

제 5조(처분의 한계) 별표 3 중 일련번호 "6"을 삭제하고, 일련번호 "7"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일련번호	종별	적용법조	처분기준내용	비고
7	복장위반	운수사업법 제 18조	30일간 정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시

⑥ 서울특별시고시제 13호

도시계획학교시설 결정

1. 서울특별시내 도시계획학교 시설
을 도시계획법 제 12조, 제 13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성동구청 시민봉사실
에 배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가. 학교시설 조서

구분	위치	시설면적	비고
학교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일동 309 번지 일대	32,340 ^{m²}	고등학교

별첨도면표시와 같음(생략)

도면은 서울특별시청 도시계획과와 성동구청에 보관.

1973. 1. 23.

서울특별시장

⑤ 서울특별시 고시 제 17 호

서울도시계획시설 및
사업 실시계획 인가 변경

1.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일
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시설 일부(사업인가선 일부조
정 및 진입로변경)를 도시계획법
제 12조와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
여 변경하고 동법 제 25조의 규
정에 의하여 변경시행할 것을 동
법 시행령 제 6조 제 1항 제 2호
제 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국 도시계획과와 서대문구청에 각
각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
계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1973. 1. 30.

서울특별시장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평창동 산 601 의 88 필
- 사업의 종류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명칭 : 평창주택단지
사업면적 : 264,606 평
- 시행자의 주소, 성명 : 한진부동산주식
회사 대표 김의상
- 사업의 착수 및 준공 :
착공 : 71. 10. 12.
준공 : 73. 6. 30.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와 건물의
소재지, 지번 및 소유권이의의 권리
명세 (생략)
-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자 토지수
용법 제 4조 제 3항에 규정된 관계
인의 주소 성명 (생략)
- 시설변경조서
가. 사업인가선 조정 별첨도면 참조

17-14 제343호

시 보

1973.1.30.

나. 가로변경 조서

구 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연장	기 점	종 점	비 고
변경 전	중로	3	1	12	254	대로 3-58 호	소로 2-2 호	건설부고시제 378 호 (71. 6. 25) 면상 2 미터 위치 이동
변경 후	"	3	1	12	254	"	소로 1-1 호	
변경 전	"	3	2	12	565	"	소로 1-1 호	
변경 후	"	3	2	12	525	"	소로 1-2 호	노선변경
변경 전	"	3	3	12	300	"	소로 1-2 호	
변경 후	"	3	3	12	295	"	소로 1-2 호	"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 제 13 호

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특별청소지역에서 세워되는 분뇨의 비수거구역을 지정하고 동법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분뇨비수거구역지정공고
오물청소법 제3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규정

1973. 1. 30.

서울특별시장

구 별	동	통	구 별	동	통
성동구	명일동	천지역	성북구	공능동	천지역
"	길동	"	"	동동	"
"	암사동	"	영등포	동동	"
"	송파동	"	동당동	동동	"
"	방이동	"	동원동	동동	"
"	거여동	"	초량동	동동	"
"	일원동	"	양재동	동동	"
"	세곡동	"	가발동	동동	"
"	신사동	"	파산동	동동	"
"	청담동	"	내신동	동동	"
"	내곡동	"	계		일부지역 (3,5,6동)
					22개동

⑤ 서울특별시 공고 제 14 호

청 산 금 납 입 고 지 서 공 시 송 달
 청 산 금 납 입 고 지 서 를 각 납 입 의무
 에게 발송한 바 있으나 수령인의
 주 소 또는 거 소 불 명 으로 직 접 송 달
 이 되 지 않아 지방세법 제 52 조의 규
 정에 의 하여 다음과 같 이 공고 한다.

1. 주 소 또는 거 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동 170-53

성명 (별첨조서 참조) 최 선호 외 51 명

2. 구 분 : 청 산 금 납 입 고 지 서 72 년 수 시 분
 가, 납 부 기간 : 73. 2. 10 까지

3. 납 부 장 소 : 당시 도시 계획 국 도시 행정과

1973. 1. 30.

서울특별시장 양 택 직

역 춘 추 가 지 구 고 지 서 공 시 송 달 자

수 납 번 호	물 건 지	금 액	소 유 자		비 고
			주	소	
14	용암동 376-7	1,866,807	성북동	170-53	최 선호 외 1 인
16	" 376-19	1,267,800	신당동	290-127	김 인 곤
23	" 397-181	198,793	신사동	224	김 영 수
24	" 397-117	806,531	낙원동	248-6	한국 예술 영회 00
43	" 319-11	310,130	효창동	5-37	하 대 수
44	" 328-2	517,971	용암동	279-1	채 규 현
54	" 305-2	359,104	인사동	120	홍 봉 환
73	" 305-34	179,852	용암동	272-108	정 정 호
94	" 산 14-9	48,136	"	산 14-9	전 선 필
95	" 302-1	116,784	"	297-66	최 선 덕
96	" 257-48 외 2 필	364,306	"	302-2	이 경 희
116	" 306-33	125,450	다 동	91-3	조 상 영
121	" 306-40	186,837	돈암동	84-60	조 관 행
130	북가좌동 13-15	249,039	고양군원당면도내리	592	유 정 열
134	" 14-1	297,062	북가좌동	14-1	김 원 표
152	용암동 328-11	368,074	소격동	98	김 종 수
161	" 393-14	158,162	동선동	3 가 106	김 정 식
165	" 393-22	220,052	용암동	369-9	채 준 희
166	" 393-23	109,354	충정로	3 가 3-315	김 영 춘
176	" 375-4	149,790	이태원동	271	박 운 식
80	" 378-15	169,767	용암동	378-15	김 세 창

17-16 제 343 호 시 보 1973.1.30

수납 번호	물 건 지	금 액	소 유 주 소	차 성 명	비 고
181	응암동 378 - 16	194,288	청주시수동 22	진수근	
186	" 378 - 46	267,544	응암동 378-46	강화용	
205	" 386 - 5	189,118	신당동 58	이상선	
212	" 386 - 15	644,782	증산동 134-2	이한갑	
260	" 378 - 101	104,256	수송동 134	방다니엘	
265	" 379 - 32	813,123	공덕동 5-23	이충호	
272	" 382 - 10	450,906	홍은동 산 11	손정자	
277	" 514 - 3	184,575	신당동 162-294	김경정	
278	" 514 - 4	162,426	북아현동 3-72	박종찬	
290	" 514 - 16	163,819	만리동 2 가 199-119	이상석	
297	" 379 - 37	820,970	안암동 2 가 95-11	홍정자	
300	" 514 - 49	59,427	응암동 514-49	한수희	
309	" 515 - 11	223,818	구산동 43	장상주	
317	" 515 - 32	176,204	창천동 76-32	변용석	
343	" 515 - 25	82,035	응암동 515-25	유영화	
344	" 515 - 26	439,521	응암동 378-63	강경순	
354	" 311 - 6	597,592	본동 248-2	김우식	
365	" 317 - 22	288,748	신사동 160	김옥산	
405	" 525 - 12	182,990	응암동 525-12	이경자	
426	북가좌동 34 - 35	99,736	북가좌동 34-35	성희정	
466	응암동 530 - 10	226,072	보문동 5 가 253	조성낙	
492	북가좌동 8 - 17	110,981	안국동 36-2	이승유	
496	" 10 - 1	207,994	봉천동 산 89	박권수	
526	" 32 - 19	122,033	성북동 2 가 275-70	양준승	
541	응암동 317 - 12	1,236,281	창성동 54-1	이옥주	
558	" 533 - 9	119,738	서판동 333-315	윤간증	
561	" 533 - 14	186,360	연희동 519-90	박희문	
565	" 533 - 44	335,448	응암동 533-44	고광모	
583	" 539 - 5	120,073	갈현동 246-67	송명호	
584	" 539 - 6	120,073	한남동 255	한창열	
587	" 315 - 19	569,232	응암동 315-19	이희운	

제 343 호

시 보

1973.1.30 17-17

사 령

◎ 1973.1.29.

공무원교육원 지방서기관 서승택
을지연습 73 전시 국가지도회의
본부파견 (73.2.1-73.4.20까지)
근무를 명함.

공무원교육원 지방서기관 한상건
을지연습 73 전시 국가지도회의
본부파견 (73.2.1-73.4.20까지)
근무를 명함.

운수운영과 지방행정사무관 이경배

을지연습 73 전시 국가지도회의
본부파견 (73.2.1-73.4.20까지)

근무를 명함.

◎ 1973.1.30.

종로구보전소 지방간호기사보 장계월
원에 의하여 그직을 면함.

서 울 특 별 시 장

정 정

시보 제 342 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 호

문화재지정 년월일 73.1.17 을 73.1.26 로 정정함.